당당한 경남시대

feel GyeongNam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32호 (2014년 2월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산달도 연륙교」 조감도

목 차

건설관련 소식 ····· 1

- 청렴으로 경쟁력을 갖추자!!!
- 진교~노량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분개통
- 도, 치수·재해예방에 3,265억원 투자, 재해만전
- 경남, 건설공사 품질시험 실적 3년 연속 전국1위
- 민간자본 등 1조 3603억원 투입, 21개 산업단지 신규 조성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 방안 추진
-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경남도, 2013년 계약심사로 616억원 예산절감
-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본격 착수
- (주)세계시장 변화의 능동적 대응으로 진주실크 명품화 추진
-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기공식 개최
- 의령군, 144억 원 투입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 함양군 "야간 건축 민원행정" 상담창구 운영
- 남부내륙철도(김천~합천~진주~거제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지식정보 ····· 12

- 道, 내년도 국고예산 3조 5,932억원 확보 추진
-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과 확연히 나타나
- 「서부권개발본부」진주 이전, 서부청사 건립 가속화
- 거제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박차
- 관계부처 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 건설분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부실·부적격 70개사 적발
- 건설 산업, 지난해 "경쟁력"세계 7위 유지
- 냉·난방비 확~줄었네~…"그린리모델링" 서둘러 신청하세요
-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 24

신기술 정보 ····· 27

건설기술심의 현황 ····· 28

계약심사 현황 ····· 29

기술인 나눔 정보 ····· 29

건설관련 소식

청렴으로 경쟁력을 갖추자!!!

▸ 도내 건설 공무원 청렴도 향상 및 2014년 건설기술심의 운영 계획 교육 개최

경남도는 24일 건설분야 청렴도 향상 및 2014년 건설기술심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도 및 시·군의 발주기관 건설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1부 초청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장 홍철호 서기관은 '청렴, 경쟁력의 원천' 이라는 주제로 "국민과 공직자 사이에 부패인식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며, 국민은 공직자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청렴은 개인의 경쟁력 뿐 만 아니라 조직,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남도 이선두 감사관으로부터 우리도 실정에 맞는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교육도 가졌다.

2부 2014년 건설기술심의 운영 계획 교육에서 강병철 건설지원과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심의수요 증가와 발주기관의 사업 적기 집행을 위해 매월 위원회를 개최토록하고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심의위원을 전문가로 하는 합동점검반의 분기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또한 심의안건별 위원회 운영 절차 교육에서는 심의대상, 심의절차, 심의의결 방법 등을 설명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령 연찬 부족으로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

한편, 2014년 건설기술심의 대상 사업으로 사전 조사된 사업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간에 업무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부임한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이날 "건설분야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은 물론 대형건설공사 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심의 업무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금번 교육을 기획"하였다고 말하며, "더 강한 경남, 더 깨끗한 경남, 청렴으로 경쟁력을 갖춘 경남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분야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3

진교~노량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분개통

- 진교면 진교리 ~ 술상마을 입구까지 3.0km 구간 1.28일 13:00부터
-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남도는 지방도 1002호선 상의 진교~노량간 도로공사 10.04㎞ 중 진교면 진교리에서 술상마을 입구까지 3.0㎞ 구간에 대하여(4차로 구간 2.4km, 2차로 구간 0.6km) 2014년 1월 28일(화) 13:00부터 부분개통 했다.

본 공사는 경남도가 2004년부터 도로 폭 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지역주민 통행불편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사업비 91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부분개통 공사구간은 그간 굴곡과 경사가 심하여 주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았던 구간에 우선 직선화 및 경사를 완화한 4차로로 확·포장하여 개통하는 것으로 통행거리가 당초 3.6㎞에서 3.0㎞로 줄어들어 소요시간이 5분 단축되고 운송비도 절감될 것이다.

또한 그간 오랜 공사로 통행에 불편이 많았던 구간 개통으로 금년 설(구정)을 맞아 남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 도로과장은 "금번 부분개통으로 인하여 지역 간 연계 발전과 주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4차로 확장 및 직선화 개량으로 인하여 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6

도, 치수·재해예방에 3,265억원 투자, 재해만전

경남도는 2014년도 치수 및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2월말 까지 90%이상 착공하고 6월말까지 60%이상 집행목표로 11개사업 3,265억원을 투자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여름철 우기전에 재해예방사업 효과가 발휘되어 총 19만 세대 51만 여명의 생명과, 건물 2만4천여동, 시가지 및 농경지 7천8백여 ha의 재산 보호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동강 등 가장 큰 오염원과 재해의 원인은 이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지천을 중심으로 하천복원·조성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들 주요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문화적 하천정비를 위하여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7개소 591억원, ▲ 생태하천 조성사업 11개소 363억원,▲ 하도준설사업 3개소 92억원 등 총 1,046억원을 들어 41개소 62km를 정비 할 계획이며,

▲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복개.훼손된 하천을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기 위해 하천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을 원래대로 하천에 돌려주는 개념의 하천이 조성되도록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8개소 398억원을 투자 56,2km를 정비할 계획이다.

▲ 지역별 역사·문화적 스토리텔링 요소를 도입 깨끗한 물이 흐르는 추억의 강을 조성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7개소 499억원을 들여 15.6km 하천을 정비하고,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하천범람 제방붕괴 등 도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기본계획수립도 20억원을 들어 17개소 50km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소하천정비 43개소 474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 26억원, 우수저류시설 2개소 161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3개소 536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13개소 105억원 등이 투자 된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 해소는 물론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면서 치수방재관리의 예산은 결코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가장 효율이 높은 장기투자 비용이라고 말했다.

< 치수 · 재해예방사업 수혜효과 >

사 업 명	수혜자		건물(동)	농경지(ha)
	세대수	명		
합 계	188,923	509,508	24,736	7,709.11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342	18,944	2,930	2,100
생태하천조성사업	2,991	7,718	1,196	866
하도준설사업	151	438	200	11
생태하천복원사업	160,530	436,160	9,215	471.10
고향의 강 조성사업	4,622	11,927	1,848	1,339
하천기본계획수립	-	-	-	-
소하천정비사업	2,200	6,607	3,120	1,208
하천유지관리사업	-	-	-	-
우수저류사업	590	1,222	941	22.6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283	25,948	5,179	1672.10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14	544	107	19.31

▌자료 : 도 치수방재과 생태하천담당 (055)211-3913

경남, 건설공사 품질시험 실적 3년 연속 전국1위

▸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중요성 인식으로 부실시공 없는 경남건설**

경상남도 자체조사 결과 도로관리사업소가 2013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실적이 최근 3년 간 전국 15개 시·도 중 단연 으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13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 실적을 보면, 경상남도는 4,307건에 3억 1400만 원으로 2012년에 이어 3년 연속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그 뒤로 충청북도 1,408건에 2억 5100만 원, 대전광역시는 481건에 2억 3700만 원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건설 분야 예산 감소 및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타 시·도의 실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상남도는 작년 구입한 노면표시·표지판 휘도측정기로 2014년부터 강화되는 차선의 휘도 기준을 시군 담당공무원들에게 교육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 매년 시험기기의 정기검사 및 교정 실시로 품질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고, 노후 시험기기는 즉시 교체하는 등 품질시험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 왔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작년에 건설관련 공무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도내 건설관계자들에게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품질 실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건설공사 품질교육 홍보를 통해 부실한 건설자재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고품질의 견실시공을 통한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 (055)254-4232

민간자본 등 1조 3603억원 투입, 21개 산업단지 신규 조성

▸ 실수요 기업에 산업용지 625만 8천㎡ 공급, 6,317명 고용창출 및 기반시설 건설에 179억 원 재정 투입

경남도는 2014년에 민간자본 1조 3603억원을 투입하여 21개 산업단지 625만8천㎡의 산업용지를 새로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179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산업용지 조기공급과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산업단지 대상지는 실수요 기업의 요청으로 경남도에 제출한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입주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가 조정 협의를 거쳐 착공이 확실한 지구로 최소화 하였다.

경남도는 실수요자들이 제출한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경남지역으로 산업용지 실수요자가 몰린 것은 인근 부산·울산에 소재한 기업들의 이전 수요와 경남 내 기업들의 확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금회 결정된 대상지 이외에도 입주 수요가 확실하고 재원조달계획 등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와 수시로 협의하여 신규 지정 물량에 반영하여 기업들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을 하면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기반시설 예산은 총 179억 원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130억 원, 공업용수 공급에 35억 원, 낙후된 지역의 농공단지 재정비에 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77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89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 되었고 88개 단지가 개발 중에 있다.

특히 경남에 신규 지정되는 21개 지구는 올해 전국 산업단지 공급 81개 지구의 26%에 달해 '전국에서 최다'이다.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고용효과는 약 6,317명으로 분석되어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전망이다.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34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 방안 추진

▸ **오는 6월까지 경남 시·군 아파트 대상으로 중점 조사·점검 추진**

경상남도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척결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법률·회계·건축·전기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월부터 6월까지 조사·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대상 아파트는 입주민이 조사 등을 요청한 단지, 아파트 관련 비리가 적발된 단지 및 분쟁·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분야는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입찰 시 업체 간 담합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회의록 미작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이다.

경남도는 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주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뿐 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 요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건축과장은 "경남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47%(2012년 말 기준)로 도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도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5

경상남도, 건축법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년간 한시적 시행**

경상남도는 2014년 1월 17일부터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건축법령에 위반되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며, 전체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인정된다.

다만, 보전산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토지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해당 시·군(건축허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방화와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며,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남도 건축과장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도내 약 2천여 가구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길이 열려, 도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16일까지(신청접수마감 2014년 12월 16일 예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도, 시·군, 지역건축사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도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4

경남도, 2013년 계약심사로 616억원 예산절감

▸ 재정건전화 시공품질 향상 기대

경남도는 2013년도 18개 시·군에서 발주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재배정 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한 결과, 61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하고 이 제도가 재정건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도입된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실적(723건, 심사금액 8,298억원, 절감액 553억원)에 비하여 건수는 24건이 감소하였으나 심사금액과 절감액은 1,019억원, 6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다.

주요 계약심사 내용은
-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비경제적인 공법, 구조계산 보다 과다 설계한 부분, 도면과 상이한 과다수량 산출분 등을 최적설계안으로 감액 조정하고,
- 적정성이 결여된 견적단가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유사 공종 또는 합리적인 품으로 조정·적용하고 비현실적인 과다한 인력품 적용을 장비조합 품으로 조정하는 것 등이다.

세부 심사실적은
- 공사분야 절감액 비중이 6.9%로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크고 용역(4.2%) 및 물품(4.3%) 등 반복사업은 기 심사단가 적용으로 절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 시·군부별 현황으로는 8개 시의 절감액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296억 원이고, 10개 군의 절감액은 320억 원(52%)으로써 절감률은 각각 6.3%, 6.9%로 나타났다.
- 절감률 측면에서는 2013년도는 6.6%의 높은 절감률을 보였으며, 연차별 추이는 2010년도 6.2%, 2011년도 6.9%, 2012년도 6.7%로써 6%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계약심사제도의 정착으로 점차 하향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심사 실무자들이 조달청 원가심사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시설원가분석관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약심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사례집 500부와 업무편람 200부를 발간하여 각 기관 관련부서에 배부하여 원가산정 오류를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조정 외에도 노임·자재단가 과소적용, 자재누락 등 오류산정에 대하여는 증액 조정하는 등 여건에 적합한 원가심사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최대한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시·군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업무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2012년도 보다 0.6%포인트 상승한 79.9%가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경남도는 계약심사와는 별도로 재정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서 70건을 심사하여 14억을 절감하였고, 201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시·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는 20건을 심사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2013년 심사실적 >

구 분	심 사 결 과 (금액 : 억 원)				비 고
	건 수	요청액	조정액	절감액(절감률)	
계	**699**	**9,317**	**8,701**	**616(6.62%)**	
공사분야	459	8,178	7,610	568(6.95%)	
용역분야	133	1,001	959	42(4.18%)	
물품구매	107	138	132	6(4.34%)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3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본격 착수

김해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 고유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 대표 하천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한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김해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의견 수렴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2013. 12월 시공회사를 선정함에 따라 금년 1월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5억원을 들여 삼계동 두곡교에서 칠산서부동 화목1교까지 9.3km 구간에 하도준설, 호안정비, 제방보축 등을 통한 치수기능 강화는 물론,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분리, 보도교 신설, 교량하부공간을 개선하여 주민편의성을 도모하고 물고기 잡이 체험공간인 피라미물장단터, 물놀이, 썰매타기를 할 수 있는 바다맞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친수기능을 확대하고

수로왕의 탄생설화 등을 테마로 하여 문화공연, 스탠드 등의 수변마당을 설치하는 금관

가야수변문화마당, 황금알다목적마당, 허황후의 신행길을 테마로 하여 문화마당, 쉼터,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는 가야나루 문화광장,수로왕능의 '쌍어문'을 형상화한 친수스탠드, 수변광장을 설치하여 물고기잡기 등의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두물고기 물장구 마당 등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하는 4개 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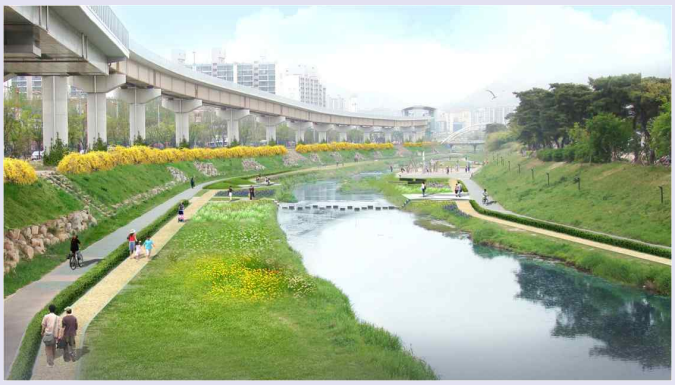

김해시는 산책로, 인도교 설치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새로운 하천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자료 : 김해시 건설방재과
(055)330-3814

(주)세계시장 변화의 능동적 대응으로 진주실크 명품화 추진

올해 진주시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이자 국내 생산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진주실크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향토산업인 진주실크를 진주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키로 하였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은 실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기반조성으로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실크전문농공단지 내 부지 11,908.6㎡, 건축연면적 12,851.96㎡로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장동(신소재개발지원시설, 봉제기술지원시설)과 업무지원동(패션비즈니스시설, 업무지원시설) 2개동으로 건립되어 공장동은 신소재 및 시제품 개발로 관내 실크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업무지원동은 명품 진주실크 홍보, 마케팅 등 업체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된 실크전문농공단지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부지 132,588㎡에 총공사비 225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총 23필지 중 19필지를 분양하였고 현재 9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이며, 10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신축 및 계획 중에 있다.

특히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영태)에서는 실크전문농공단지 내에 견연사 생산기반시설과 사무실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를 득하여 추진 중에 있어 올해 안으로 조합 사무실이 입주하고 견연사공장이 가동되면 미분양된 공장용지의 분양과 실크전문농공단지가 활성화 되어 진주실크산업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다.

시는 관내 실크업체가 세계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을 유도하기위해 실크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사업, 해외 유명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기술지도 사업,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수도권의 유명 백화점에서 품평회 및 수주 상담회 사업 등 18억원('13년 대비 5.5억 증)의 사업비를 한국실크연구원에 지원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로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주실크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실크업체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시 국내 박람회는 참가 회수에 제한 없이 부스 임차비 전액을 지원하고 국외 박람회는 2회에 600만원(1회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까지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던 진주실크 박람회 및 진주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올해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실크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여 국내·외 관람객에게 진주실크의 우수성 홍보 및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한국실크연구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실크업체의 끊임없는 품질 개선과 노력으로 진주실크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어 70~80년대의 호황기를 되찾아 다시 한번 진주의 주력산업으로서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실크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자료 :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
(055)749-5266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기공식 개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기공식이 지난 24일 산달도 선착장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턴키방식(설계,일괄시공방식)으로 진행 중인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는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평가 심의를 실시하고, 롯데건설(주)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중이다.

공사기간은 60개월로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7억 원으로 공사비 449억 원, 보상비 및 감리비 등에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제면 소랑리 지방도 1018호선과 산달도를 연결하는 본 도로는 총 길이 1,413m로써 연륙교 620m 구간이 사장교로 계획되어 있다.

산달도 연륙교 건설은 산달도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산달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연결도로를 통한 도시와 도서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도서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거제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거제시 문화공보과
(055)639-3384

의령군, 144억 원 투입 의령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의령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고향의강」 선도 사업으로 지난해 의령천이 선정됨에 따라 의령천을 치수 안정성 증대와 함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가례리 갓실교~정암리 남강 합류부까지 7.3km에서 이뤄진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국비 60%를 포함 144억원으로 오는 2월까지 지역관계자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2016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획일적인 하천정비에서 벗어나 옛 정취를 간직한 건강한 하천, 역사와문화가 흐르는 하천,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이라는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자연이어우러지는 랜드마크 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내에는 힐링로드 조성을 위한 전망대, 데크로드설치, 가례천 합류부 인도교설치, 다목적운동시설 설치, 수목 식재를 통한 수질정화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유지용수 방류와 함께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 자료 : 의령군 안전관리과
(055)570-2771

함양군 "야간 건축 민원행정" 상담창구 운영

함양군(민원과)은 1월 20일부터 바쁜 직장인과 원거리 거주 민원인에 대한 건축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야간 건축 민원 행정"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로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이며 월, 화, 목요일로 지정해 주 3일간 건축, 농지 및 개발행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아울러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동시간대에 여권발급 야간서비스도 같이 시행한다고 하였다.

주요상담 민원내용은 건축인허가 관련사항,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련민원, 건축 관련 주민분쟁과 애로사항,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관련 민원사항, 여권발급 안내, 그 외 군정전반에 대해 상담하여 내용에 따라 관련부서 안내도 병행한다.

함양군 강명구 민원과장은 "군민을 위한 다양한 건축 민원 행정을 펼쳐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을 건설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될 수 있는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 자료 : 함양군

남부내륙철도(김천~합천~진주~거제간)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중부내륙권과 연결하는 산업기반 구축으로 국토균형개발을 도모하게 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해 12월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후반기(2016~2020) 착수사업으로 되어 있어 전반기 착수사업(2011~2015)에 반영하여 2015년 까지는 착공될 수 있도록 경남도는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최된 간담회에서도 해당 지역 부단체장들이 본 과업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에게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당위성과 조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추후 개최될 간담회에서도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통과에 도 및 기초지자체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천~합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구축사업은 총연장 186.3㎞로 사업비는 6조 7,907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기본계획 1년,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공사 5년 총 8년 정도 예상된다.

이 철도는 KTX로 시속 250㎞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화 철도로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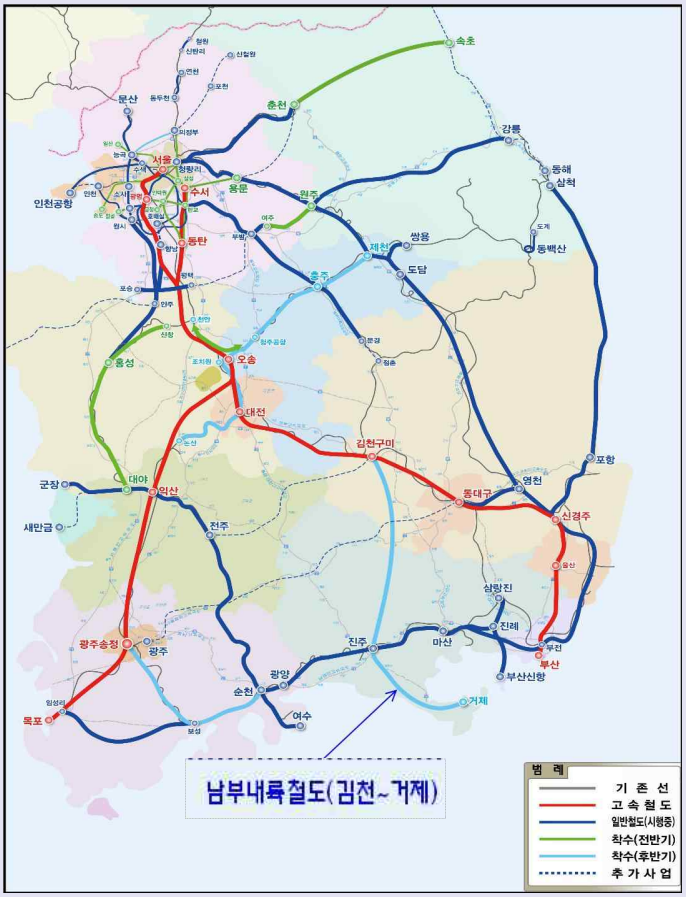

▌자료 : 도 교통정책과 공항철도담당 (055)211-4493

道, 내년도 국고예산 3조 5,932억원 확보 추진

- 금년도 국비 확보액 3조 4,886억원보다 1,046억원(3.0%) 증액 목표
- 30일 단축된 정부예산안 일정에 맞추어 예년보다 서둘러 국비확보 준비에 박차

경남도는 2015년도 국고예산 3조 5,932억원(국고보조사업 2조 8,745억원, 광특회계사업 7,187억원)을 내년도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국고예산확보를 위해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금년도 3조 4,886억원 보다 1,046억원(3.0%)이 늘어난 규모로서, 정부「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지출 증가율(3.0%)을 반영한 것이다.

경남도는 국비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6개단 55명으로 구성된「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남미래 50년 전략산업, 철도·고속국도·항만 등 도정 주요현안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고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예산편성방향과 연계하여 우리도의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 행정적 선행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기존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안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예산지원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국비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도지사도 지난 13일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예산안 편성 일정이 30일 앞당겨진 만큼 내년도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도가 추진하는 경남미래 50년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간부공무원들을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역핵심사업, 신규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을 확정하여 4월까지 중앙부처에 국비신청을 완료하고 실국본부장 등 간부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당부처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할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자료 : 도 예산담당관실 재정지원담당 (055)211-2373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과 확연히 나타나

- 2013년도 4분기만 적용해도 230억 재정절감
- 2014년도에는 530억 원 재정절감 기대, 도민의 품으로

지난해 11월 체결된 거가대로 자본구조의 재구조화사업으로 기존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해 4분기(10월~12월)에 대해 비용보전방식으로 비용보전 금액을 결정한 바, 그 성과가 새해부터 확연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당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3년도 재정보전금은 611억 원이었으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재구조화 하면서 381억 원만 부담하게 되어 23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구분	방 식	기 간	지급금액	재정부담	절감액
당초	MRG	'13.1.1~12.31	611억원	611억원	230억원 (경남 115억원)
변경	MRG	'13.1.1~9.30	359억원	381억원	
	SCS	'13.10.1~12.31	22억원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전 기간 SCS방식이 적용되어 기존 MRG방식이었다면 총 643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을 재구조화에 따라 113억 원만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려 530억 원의 재정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분	방식	기 간	보장금액	재정부담	절감액
당초	MRG	'14.1.1~12.31	1,511억원	643억원	530억원 (경남 265억원)
변경	SCS	'14.1.1~12.31	982억원	113억원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은 2011년 민간사업자가 자금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하자 주무관청이 재구조화를 요구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이후 법률·회계·금융 협상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자사업TF을 구성하여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력을 높였고 그 후 지속적인 협상과 끈질긴 노력으로 지금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성과는 당장 새해부터 현실화되어 향후 37년간 5조 4천억 원이라는 획기적인 재정절감의 효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민자사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지난해 전국 예산효율화 우수사례(세출 분야) 발표대회에서는 경남도의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재구조화를 완료한 사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더불어 교부세 3억 원의 시상금 명목 사업비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정부에서도 그 효과를 높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에 새로운 단초를 마련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거가대로 재구조화사업이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경남도와 부산시는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용역을 직접 의뢰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5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공고 시 재정부담 완화방안으로 재구조화를 명시하였으며, 7월 5일자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에서 MRG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은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사례를 발판삼아 마창대교 재구조화도 반드시 성공하여 민자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에서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자료 : 도 재정점검단 민자지원담당 (055)211-2922

「서부권개발본부」 진주 이전, 서부청사 건립 가속화

▸ 22일 개청식과 함께 서부권 시·군 발전 업무 본격 추진

경남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신설한 서부권개발본부를 진주로 이전하고,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서부권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원과 서부권발전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서부권개발본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부서로 본부장 이하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단, 개발사업추진단 3개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명이 진주시 종합경기장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각 단별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 균형발전단은 균형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사업,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전단은 서부권 성장 중추도시 육성을 위한 진주부흥프로젝트, 서부청사 건립 준비, 도산하 공공기관 이전, 진주 혁신도시 조성 지원 추진, 개발사업추진단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신발전지역 육성,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등 경남도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을 각각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서부권개발본부의 진주 이전은 지난 1925년 진주 소재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 후 처음으로 도 본청 실국단위의 기구가 다시 진주로 옮겨오는 동시에, 창원 바깥으로 첫 이전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간 서부경남은 도내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데 반해 인구는 22% 수준이며, 지역내 총생산은 17%대에 머물러 있어 중·동부경남과의 격차가 고착되는 현상까지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취임 초부터 도시와 상대적 격차가 있는 농어촌 지역도 의료, 교육, 문화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정을 수행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하였고, 중·동부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과감하고, 신속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이 지정되고, 지난 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가 조기 착수하게 되면 경남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갈 양대 축이 완성되고, 이와 함께 서부권개발본부의 핵심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그간 문제되어왔던 서부경남과 중·동부경남과의 불균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2014년 서부권개발본부 이전을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항공우주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항노화 산업 등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고르게 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도 균형발전단 균형정책담당 (055)211-6415

거제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박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으로 민간사업자 유치 전략

경남도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와 거제시가 한려해상문화관광권의 거점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을 수변 공간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시설 설치와 골프장 규모를 9홀에서 18홀로 확대하는 기본계획(안)을 검토하는 등 투자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거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 동안 장목관광지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출향기업, 재경도민회, 투자업체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투자 설명회를 해왔었다. 도는 이러한 투자 설명회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양레포츠 시설 설치와 주변 여유부지를 편입하여 골프장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 거제시, 경남발전연구원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편, 도는 기존 수립된 장목관광단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간의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는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자문 의견에 따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3월에 발주하였다. 그리고 도는 지난해 10월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도출된 문제점과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장하는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의 방향을 잡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오는 4월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와 KDI의 적격성조사를 거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사업 투자심의 후 신규사업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도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055)211-4834

관계부처 합동 턴키 담합·비리 근절대책 추진

▸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턴키 담합 및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1월2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턴키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설기술력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턴키 담합·비리로 인해 이러한 성과보다는 턴키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10.1),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도입('12.5) 등 그간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간의 턴키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 심의제도 개편: 평가위원 소수화 및 사전공개, 평가결과(사유서) 공개 및 해명제도 도입, 심의기간 확대 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0.1)

-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담합이 3번 발생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2.5)

- 담합·비리 감점제도: 담합·비리행위 업체에는 턴키심의 시 2년간 감점 10점 부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훈령 개정, '12.7)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담합, 광주광역시 턴키비리 등 턴키 담합·비리 사건이 최근에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정·투명한 턴키 입찰제도 구축'을 정책목표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제도의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합 방지

①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조정

ㅇ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 발주 시 업체간 "나눠먹기",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함에 따라 각 발주청별 턴키 발주물량 및 시기를 조정토록 한다.

② 부실설계업체 감점부과

ㅇ 품질이 낮은 "B설계"를 통한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 시 감점부과 제도를 도입한다.

③ 가격담합 방지 위해 가격평가방식 개선

ㅇ 낙찰률 95%이상 고가격 담합투찰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롭게 마련하여 도입한다.

④ "공정입찰 모니터링위원회" 구성·운영

ㅇ 업체간 담합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각 턴키심의 발주청에 구성·운영한다.

◈ 비리 방지

①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강제차등 확대

ㅇ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한다.

② 심의위원 임명시점 탄력운영

ㅇ 심의위원 명단의 장기노출 시 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심의위원들의 구성기간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③ 경험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심의 위탁 활성화

ㅇ 연 1건 이하로 심의경험이 부족한 일부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턴키 담합·비리 근절을 통해 건설시장에 건전한 입찰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턴키제도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공정한 입찰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경제장관회의('13.12.26)를 통해 올해부터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에 확대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마련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수행능력 평가>

①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 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해당 공사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관련한 시공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 완료시에 발주기관이 시공결과를 평가하는데, 입찰자의 과거 시공평가 결과의 평균을 평가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공공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사업자의 낙찰가능성을 높였다.

②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평가항목을 운영으로 동일 공사 매출액 비중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기술력·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인다.

③ 유사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간 공정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사난이도·규모 등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제를 운영하여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에 참여시에는 감점을 받게 된다.

<입찰가격 및 가격의 적정성 평가>

① 가격점수는 입찰 평균가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 상한가격(예정가격)과 비교하여 산출되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② 철저한 하도급 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운영되어 입찰자는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 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획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처리 된다.

한편, 발주기관은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시 해당 사업자에 대해 2년간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하게 되며, 세부 공종별 단가, 물량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 평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는 내년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여부가 검토되며, '14년도 시범사업은 LH,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적용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에 확대시행이 유예되었다.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건설분쟁,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7일부터 발효되는 법률('13.8.6.공포)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률에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였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피신청인의 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정과정에서 피신청인 등 당사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조정이 접수되면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조정신청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각각 설치되었는데,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500만 원으로 정했다.

* 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횟수는 1년간 누계)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분쟁 조정 체계를 정비하게 되어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 (재판) 1~2년, 소송비용 발생 → (조정) 약 4개월, 별도 비용없음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4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부실 · 부적격 70개사 적발

▸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13.7.1.~'13.12.31.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 하여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구분	조사 대상 업체수	부실 부적격 업체수	유형별 적발업체 수		
			등록취소 및 말소		
			부정 등록	3회이상 업무정지등	자진 폐업
2012년	571	67 (11.7%)	0	2 (3.0%)	8 (11.9%)
2013년	**572**	**70 (12.2%)**	**1 (1.4%)**	**3 (4.3%)**	**13 (18.6%)**

구분	조사 대상 업체수	부실 부적격 업체수	유형별 적발업체 수		
			업무정지		과태료
			2년이상 입찰 미참여	등록 기준 미달	변경등록 지연 등
2012년	571	67 (11.7%)	1 (1.5%)	9 (13.4%)	47 (70.2%)
2013년	**572**	**70 (12.2%)**	**1 (1.4%)**	**14 (20.0%)**	**38 (54.3%)**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3

건설 산업, 지난해 "경쟁력" 세계 7위 유지

▸ 해외시장 "적극공략" 결과... 시공 경쟁력 지속적 상승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2013년도 국내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21개 국가 중 7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 개발된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종합 평가」는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평가」는 건설시장규모·건설시장성장률·건설리스크·건설제도·시장안정성·인프라 등의 총 6개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나타내며,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는 시공·설계·가격경쟁력 등 총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건설기업의 경영능력과 성과를 나타낸다.

국가별 건설 산업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3년 연속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3~6위, 한국은 2012년과 동일한 7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유럽의 강세가 지속되었다.

세부지표인 국가별 건설인프라 경쟁력 지표 평가결과 2012년에 이어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8위를 기록, 2011년 11위, 2012년 10위에 이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건설인프라 경쟁력의 순위상승은 세부지표 중 건설시장 성장률의 비약적 상승('12년 16위 ⇒ '13년 8위) 및 우수한 건설리스크 관리 환경(2년 연속 4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편, 건설시장규모·건설제도·인프라 분야는 10위, 시장안정성 부문은 13위로 중위권 수준을 형성하여 향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세부지표인 국가별 건설기업 역량평가 결과에서는 미국이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은 2년 연속 7위를 유지하였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시공경쟁력은 해외매출액이 전 분야에 걸쳐 큰 성장세를 보이며 순위가 상승('12년 8위 ⇒ '13년 4위)하였으나

설계경쟁력 평가에서 전력과 상수도 분야 해외매출액 저하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순위가 하락('12년 10위 ⇒ '13년 19위)하여 전체적으로는 동일 순위를 유지함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력 확충과 시장개척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건설기술관리법 전면개정을 통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을 통하여 건설제도 보완 및 설계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49

냉·난방비 확~줄었네~... "그린리모델링" 서둘러 신청하세요

▸ **민간건축물 지원, 1.27.~3.7.까지 희망자 접수**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단열성능 개선을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받게 하고, 공사완료 후 절감되는 냉·난방비로 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시범사례 조사결과 외벽 단열보강,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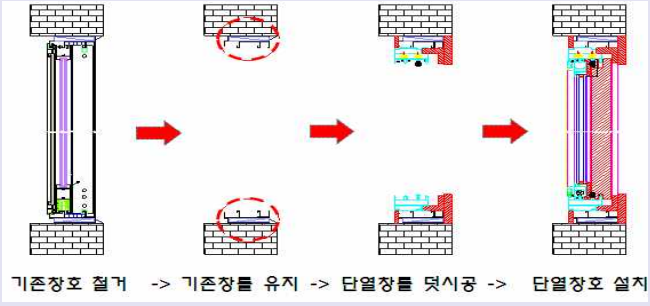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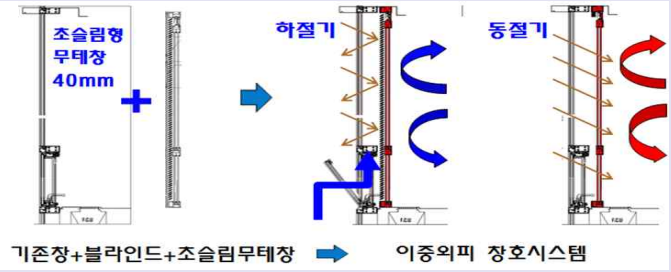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신청은 1월27일부터 3월7일까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업은 현장평가 등을 거쳐 4월7일까지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 방문, 우편, 또는 e-mail(green@kistec.or.kr)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2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031-930-4666)에 신청 가능

사업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창조센터의 기술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10년부터 구축한 건축물 노후도, 에너지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 연락하면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7일 '2014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장소 추후공지)를 열어 자세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거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도 줄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개요》

- o 이자지원 예산: 20억 원(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2~4%까지 5년간 지원)
- o 대출한도: 비주거 30억 원, 주택 5천만 원(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 원)
- o 지원대상 공사: 단열 및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 '2014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 가능

《사업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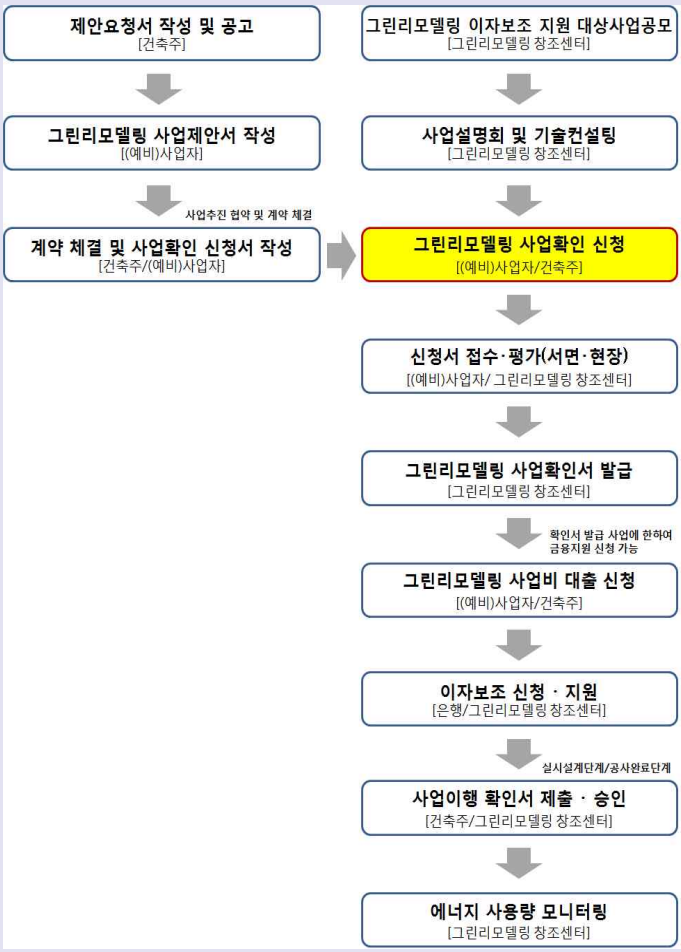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불공정한 계획 관행 개선 등**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월29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건축물은 인류 문명과 함께 태동하여 한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고, 국가 도시의 브랜드를 형성하는 관광자산이기도 하며,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므로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큰 것으로 평가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시켜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
-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
-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

②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 체계 개선

-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

-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 보호
-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 개선 ('14년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

③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화
-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여 설계·시공의 경쟁력 제고
-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

④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
- 우리 건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여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13.10.30.)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14.2.10.)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도록 논의되어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용을 모두 담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8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입법예고일 : 2014. 1. 1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9호)

▢ 예고기간 : 2014. 1. 17. ~ 2014. 2. 25.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에 따라

-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하고,
-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복주택건설에 따른 국·공유재산 감면율 및 건축기준 완화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나. 행복주택사업 시 국·공유지 등의 포함 비율 및 구체적인 범위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다.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사용·대부 감면율 등을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라. 행복주택사업 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기준을 별도로 정함(안 제23조의4 신설)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의 범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에 제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2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시설용지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도 위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인지?

▢ 회　　답(2013. 7. 23.)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시행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업단지에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산업시설용지에 입지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가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의 신설에 따라 별도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없이 곧바로 산업시설용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설비의 위치를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은 부칙 제2조에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영 시행 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영 시행 후 같은 영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 관련 없는 부분에 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있기만 하면 같은 영 제1조의2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기존의 개발계획 상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었던 설비의 용지가 산업시설용지로 의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영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이 기존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상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공공시설용지 등에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 후 이를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하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용지는 이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거나 그 위치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산업시설용지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산업시설용지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 :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

▢ 회 답(2014. 1. 7.)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유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가 준용되는 범위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귀속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3. 15. 회신 11-0677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료 : 법제처

펌프제어에 의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시스템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현대건설(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8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개량 및 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IMG) 시스템으로 펌프와 펌프의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압력조절기능과 유량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0 shot으로 6개 공을 동시에 주입할 수 있고 1.5 및 2.0 Shot 으로 3개 공을 동시에 주입이 가능한 멀티 자동 주입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Lugeon 시험 및 결과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하며 묽은 배합에서 진한 배합까지 전 과정을 내재된 로직에 의해 지반에 할렬현상이나 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압력 및 유량을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으며, 주입 중 압력?유량?시간 등의 모든 그라우팅 과정이 모니터링 및 저장되어 지반별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그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펌프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그라우팅 압력 및 유량 조절 시스템으로 1.0 Shot, 1.5 및 2.0 Shot에서 동시주입이 가능하고, 탑재된 제어 로직에 따라 수압시험, 전통적인 주입방법과 GIN 주입방법에 따라 할렬 압력 이하로 압력과 유량을 자동 제어하여 주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인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 장치 및 시스템

철도교량에 설치되는 콘크리트도상용 비배수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케이알티씨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19호**
- **기술분류 : 토목/철도/기타 철도시설**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도교량에 설치되는 비배수형 조립식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으로 내구성이 확보된 구성자재를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우수하며, 별도 배수시설이 필요 없는 방수성이 뛰어난 비배수 방식으로 물받이 이물질 적체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작업이 거의 필요 없다. 또한, 교량공사 완료 후 궤도공사 시 부설되는 보호콘크리트층(PCL)과 일체화 시공됨으로서 타 공종과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비배수 방식의 고무SEAL로 유간을 폐쇄함으로서 교량점검 등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도교량상 콘크리트도상궤도에 설치되는 비배수형 부분조립식 신축이음장치를 보호콘크리트층(PCL) 타설과 동시에 설치한 후 RAIL 본체에 고무SEAL을 조립하는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4. 1. 16.(목)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1-01	거창군 도시개발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창군	조건부 적격
2014-1-02	창녕군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 분야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녕군	조건부 적격
2014-1-03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조건부 적격

2014년 제2회, 제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11건

○ 심의일자 : 2014. 2. 18.(화) / 2014. 2. 19.(수)

의안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4-02-01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치수방재과)
2014-02-02	김해시 블록구축계획 및 유수율 제고사업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수도과)
2014-02-03	하동군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하동군 (안전총괄과)
2014-02-04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의안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4-03-01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전면책임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치수방재과)
2014-03-02	가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함안군 (안전총괄과)
2014-03-03	김해시 하천분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건설방재과)
2014-03-04	진례 및 진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하수과)
2014-03-05	김해시 건축분야 전면책임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김해시 (건축과)
2014-03-06	거제시 건축조경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거제시 (관광과)
2014-03-07	창원시 건축분야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창원시 (체육진흥과)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현황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1월	계		39	49,837	46,108	3,729	7.48%
	공사	토목	18	43,329	39,885	3,444	7.95%
		건축	2	3,947	3,826	121	3.07%
		기타	3	4,657	4,114	543	11.66%
	용역		10	5,746	5,495	251	4.36%
	물품		11	762	728	34	4.50%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기술인 나눔 정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국토교통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 미흡	•(점검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점검시기)사용승인일부터 10년 후 2년마다 1회 정기점검 •(점검자·점검항목)유지·관리 점검자는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등 36개 항목과 안전강화·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	건축법 시행령 ('12. 7월) 녹색건축과 (044-201-3770)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기재 시기 개선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	•허가권자가 건축법령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그 위반내용 기재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4. 1월) 녹색건축과 (044-201-3770)
건설ENG 업역 및 건설기술자 통합관리	•업역 및 건설기술인력간 관리체계 분리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등으로 각각 관리해오던 건설ENG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 체계로 통합 •건설기술자·감리원·품질관리자를 건설기술자로 통합	건설기술진흥법 하위법령 ('14. 5월) 기술정책과 (044-201-3551)
건설공사 공정성 제고	<신설>	•계약당사자간 불공정 계약특약조건 무효화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수급인이 대급지급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14.2.7) 건설경제과 (044-201-3515)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제도 시행일) / 관계 부서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화	•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임의 •조정결과는 당사자간 "합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로 이원화	•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 효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건설산업기본법 ('14.2.7) 건설경제과 (044-201-3512)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특·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가능	•시·도지사,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는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인구10만 이하 시장, 군수, 행정시장,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경관계획 수립 가능	경관법 ('14. 2월)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별도규정 없음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 실시 •개발사업·건축물 등에 대해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 기준 완화 적용	경관법 ('14. 2월)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모든용도지역) -시행령이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용도를 열거 •준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제한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 입지 제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시행령이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금지하는 용도를 열거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어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바닥면적 3천㎡미만의 판매서설 입지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1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08)

※ 위 내용은 일부 항목을 발췌한 사항으로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